

성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우리 구 광진구 자양4동 199-2번지 성화연립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성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(現소규모재건축)
-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199-2번지(2,410㎡)
- 다. 시 행 자 : 성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라. 조합설립인가일 : 2017. 9.20.

2. 공람내용 : 성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

가. 조합설립인가 개요

사업명	면적	위치	조합설립인가일	비고
성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2,410㎡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199-2번지	2017. 9.20.	

나. 취소사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

3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가. 공람기간 : 2026. 7. 27.(월) ~ 2026. 8. 10.(월)
- 나. 제출방법 : 본 공람·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또는 담당자 메일(yukim@gwangjin.go.kr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☎02-450-970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